

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-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.(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)
 - 고객(개인, 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, 담보)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(단,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)
1. 행사대상 :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.
 2. 행사요건

구 분		행사요건
가계	소득, 재산 증가	-소득이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하였거나,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→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, 연체해소,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	신용도 상승	-CB사 신용평점 상승,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→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	기타	-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→당사는 차주의 재산,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※ 추가사항) 차주가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,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·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, 연체금액·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, 연소득·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
기업여신	-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-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-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-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-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	

3. 신청방법

- 금리인하 요구하는 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* 등을 제출.
- * 가계여신 :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재산세납부증명원, 해당자격증,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.
- * 기업여신 : 재무제표, 신용평가서, 특허증, 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.

4. 심사 및 통보절차

- ①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 후,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(금리인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)에 처리 결과를 차주에게 서면,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, 팩스 등으로 통지.
- ②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.

5. 기타

-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.
- 금리인하 적용은 회사의 수용시점이며,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 체결시점으로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기업명 :

대표자 :

(인)